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된다... 월세세액공제 5%p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드공제 1인당 326만원... 올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씬씀이에 따라 소득공제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소비가 2020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추가 한도 100만원 내에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에서는 연봉 25%(1750만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원에 15% 공제를 적용받기에 총 26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새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3월의 월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